

#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

 사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

# 1. 예산 총칙

제1조(예산의 규모)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.

## ○ 예산총액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(2차추경)	기정예산액(1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930,409	2,936,168	△5,759	-0.20%

## ○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(2차추경)	기정예산액(1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930,409	2,936,168	△5,759	-0.20%
사업 수입	540,412	539,392	1,020	0.19%
보조금 수입	2,341,997	2,356,937	△14,940	-0.63%
후원금 수입	4,660	1,500	3,160	210.67
전 입 금	12,000	7,000	5,000	71.43%
이 월 금	31,329	31,329	0	0
잡 수 입	10	10	0	0

○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(2차추경)	기정예산액(1차추경)	증감액	증감률
총계	2,930,409	2,936,168	△5,759	0.20%
사무비	348,139	363,342	△15,203	-4.18%
예산조정비	6,940	0	6,940	0
사업비	2,545,445	2,542,942	2,503	0.10%
잡지출	0	0	0	0
예비비및기타	29,884	29,884	0	0

제2조(예산의 내역)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·세출의 명세는 붙임과 같다.

제3조(추가경정예산) 추경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.

제4조(예산의 전용) ① 예산의 중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.

② 예산의 항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되, 100만원 이하의 예산 변경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
③ 예산의 목간 전용은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
제5조(예비비)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지출 초과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% 내외를 예비비로 계상한다.

②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) 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지침을 준용한다.